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○ 발의일자: 2022. 6. 1.

O 발 의 자: 이동운 의원 외 5명

O 회부일자: 2023. 6. 7.

O 상정일자: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14.)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이 동 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 등에 대한 사항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- O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전문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- O 비밀유지 의무 및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)
-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
-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,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 국민권익 위원회에서도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제정하는 것으로,
- 우리구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구정의 투명성확보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안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 남지 않고 구민고충처리 위원회가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위촉에 적정을 기하고, 위원회 지원 별도의 사무기구 설치와 구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